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월 28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이 2011. 9. 16일 제정되어 2012. 3. 17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,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, 제31조에서 규정한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”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~3조)
-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5조)
- 위원회 위원의 임기,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8조)
- 위원회의 회의, 간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~11조)
-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)
-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지적과장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지적과, 우편번호 120-703, Tel : 02-330-1239, FAX : 330-1239, 또는 E-mail : sunny722@sd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